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8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장종태 · 김문수
전종덕 · 송옥주 · 백혜련
박 정 · 임미애 · 남인순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,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,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‘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’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, 2023년 대비 26% 증가한 반면,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.8%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

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5 신설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5(표준진료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때에는 동물병원 운영비 및 동물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, 동물보호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 산출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5(표준진료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할 때에는 동물병원 운영비 및 동물의약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, 동물보호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1항에 따른 표준진료비의 상한액 산출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